

2026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전문기관 모집 공고

국내 소상공인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위한 2026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모집 및 사업 개요

본 사업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 소상공인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입점-마케팅-주문-결제-유통 연계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 단, 국내 플랫폼 기반의 해외 판매 서비스 또는 역직구 지원 성격의 플랫폼은 제외

□ 모집개요

- (모집대상) 전문기관 1개社 내외(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자격요건) ① 3년 이내 유사 과업 수행 실적 및 ② 본 사업에 투입 가능 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한 기관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6. 12. 31. 까지
- (사업예산) 총 사업비 1,600백만원
- (주요역할) 소상공인별 계약 체결 내용 검토 및 지원 현황 파악, 수행기관 산출물 적정성 검토, 사업비(국비, 자부담금) 정산·관리 등
 - 사업 KPI(수혜 소상공인 60% 해외 온라인 플랫폼 신규진출) 달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해외 온라인플랫폼 미입점 소상공인의 해외 시장 첫 진출 및 신규 판로 확대를 통한 온라인 수출 첫 걸음 지원
- (지원대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 미입점 소상공인
 - 단, 기(既)입점 플랫폼 외에 타 플랫폼 신규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예시) '아마존US' 기입점 소상공인이 '쇼피' 신규진출 희망할 경우 ⇒ 지원 가능
 - 선정 이후라도 입점 희망 플랫폼의 既 입점 사실이 확인될 시 선정 취소
 - 지원 이후라도 입점 희망 플랫폼의 既 입점 사실이 확인 될 시 지원 금액 환수
- (지원규모) 1,600백만원 / 300개사
- (지원내용)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첫 진출 및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4가지 항목 지원, 입점 지원은 필수(미입점시 선정 취소)

<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지원 항목 >

구분	패키지	지원 항목	비고
필수	입점 지원	• 입점 지원(계정 생성, 상점 개설, 상품 등록 등)	총사업비 공급가 최대 5,625천원 국비 최대 4,500천원 자부담 최대 1,125천원 부가세* 최대 562.5천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해당 없음
선택	콘텐츠 제작	• 제품 사진, 홍보영상, SNS 업로드용 콘텐츠 제작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번역 포함) • 수출용 제품 패키지 디자인(실물 제작 불가) • 상세페이지 제작(번역 포함)	
	컨설팅	• 해외 시장조사, 경쟁사·경쟁 제품 분석 컨설팅 • 법무, 세무, 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 서류 대행, 현지 진출(법인 설립, 창고 개설 등) 컨설팅 • 상품 개선, 판매 전략 컨설팅 등	
	특허·지재권	•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등록	

- (운영방법) 지원 항목 중 선택 항목에 한해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자율 선택하고, 지원 한도 내 사업 지원

* 중진공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기관 연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사이트 內 등록 수행기관 중 자율 선택

- (사업기간) ~ 2026. 12. 31. * 추진 현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대상

□ 신청자격

< 주의사항 >

선정 후 총 1,937,500천원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보험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검토 필수 / 선정 후 미제출 시 선정 취소, 차순위 선정

* 정부보조금(1,600,000천원) + 소상공인 자부담금(337,500천원)

- ① 3년 이내 유사 과업 수행 실적 및 ② 투입 가능 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한 기관

* 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을 통한 국고보조금 사업 수행이력이 있으며, 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서비스 산출물(결과물) 검증이 가능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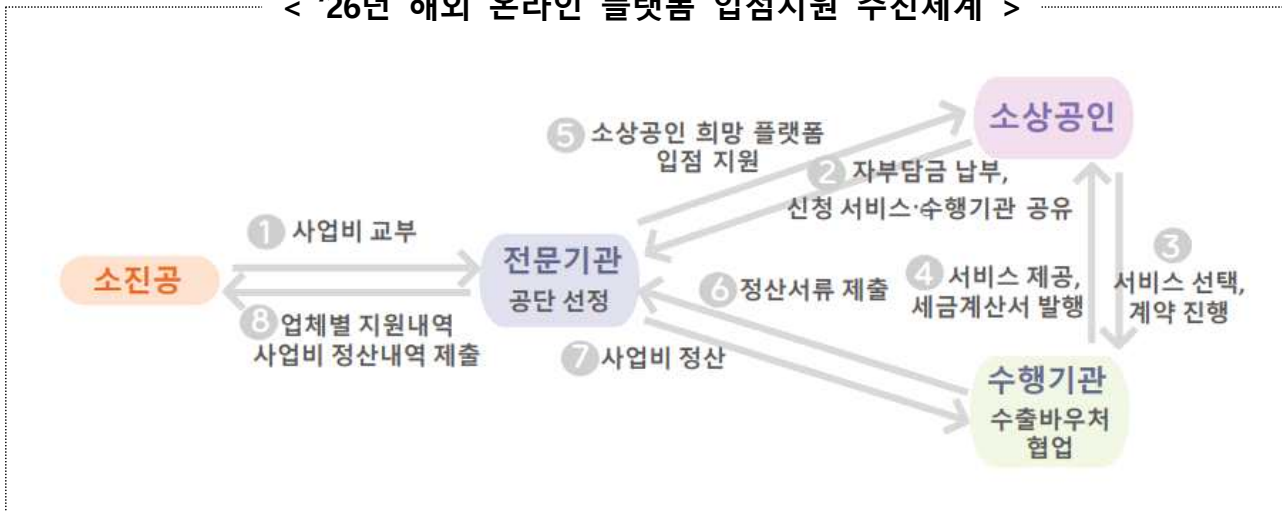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제한 요건에 해당 시 참여 불가

요 건	세 부 내 용
① 휴 · 폐 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 금 체 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대표자)
③ 채 무 불 이 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대표자)
④ 자 본 잠 식	○ 재무제표 상 자본잠식상태의 기업
⑤ 금 융 규 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기업(대표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대표자)
⑥ 참 여 제 한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⑦ 기 타	○ 정부보조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할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과업 세부 내용

< '26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추진체계 >



1 사업 운영 · 관리 등

- (사업 홍보)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소상공인 모집·홍보 등
- (사업설명회) 수행기관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각 1회 사업 설명회(온·오프라인 병행) 진행, 설명 자료 제작 등 관련 업무 수행
- (소상공인 지원·관리) 소상공인 선택 수행기관 및 서비스 항목 사전 확인 등
 - 선정 소상공인이 선택한 플랫폼 입점지원(필수) 서비스 수행
 - 선정 소상공인이 입점을 희망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旣 입점 여부를 파악하고, 旣 입점 확인 시 공단 공유 후 선정 취소
 - 소상공인 문의 응대 등 사업 지원을 위한 C/S 전담 인력 별도 운영

< 주요 운영·관리 사항(안) >

1. 서비스 : 본 사업 지원 항목 해당 여부+입점 지원 항목 선택 여부
2. 수행기관 : 선택일 기준, 중진공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해당 여부
3. 추진 현황 : 소상공인-수행기관 간 체결 계약 내용 이행 여부 등

- (소상공인 실적 관리) 수혜 소상공인별 입점 완료 플랫폼 및 지원 서비스 항목 등 실적관리
- (KPI 달성) 수혜 소상공인 60% 해외 온라인 플랫폼 첫 진출
* 수행기관이 제출하는 과업 결과보고서 등, KPI 달성 증빙서류 제출 必
- (월별·중간·결과보고) 월별 보고(매월 1일), 사업 중간보고서('26.8월 예정), 최종 결과보고서('26.12월 예정) 제출
- (우수성과 발굴) 지원 완료 소상공인 우수사례(해외 판로 확대, 매출 증대 등) 15건 이상 발굴, 우수사례 보고서 별도 제출
- (기타사항) 기타 공단이 위탁한 업무 또는 긴급업무에 대한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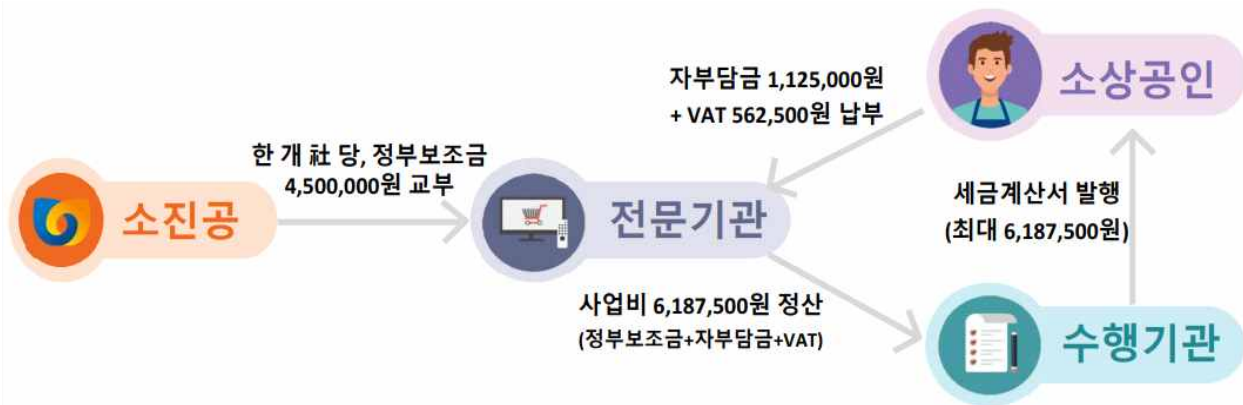
< 전문기관 주요 과업 흐름도 >



2 사업비 관리 · 정산

- (소상공인 자부담금) 선정 소상공인 대상 자부담금 납부 안내, 자부담금 입·출금용 별도 통장 개설 및 내역 관리
 - 제휴카드를 통한 무이자 카드 결제* 사항 등 주요 사항 안내
 - * 단, 자부담 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에 직접 결제
- (수행기관 정산) 해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운영 지침, 사업 운영 매뉴얼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수행기관 산출물 검토
 - 수행기관에 총 2회(선금·잔금) 걸쳐 사업비를 정산하되, 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 산출물 증빙자료 검토 후 잔금 지급
 - 수행기관-소상공인 체결 계약서 및 수행기관별 사업비 정산 내역 등 관련 서류 중간·결과 보고 시 공단 제출 必

<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사업비 운영 구조 >



소상공인 1개社 당 최대 5,625천원 규모 지원

국비 최대 4,500천원 + 소상공인 자부담 최대 1,125천원 + 부가세 10%(최대 562,500원)

4.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6. 5. 15.(금) ~ '26. 5. 29.(금), 18:00까지 “접수완료”

* 신청 후 추가 수정은 불가하며, 기간 외 신청 건은 평가 제외

□ **신청방법** : 사업전용 전자우편(global@semas.or.kr)으로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전체 서류 파일 압축(번호 순서) 후 전자우편 제출

* 제목은 “[업체명] 2026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신청서 제출”로 할 것

구분	제출 서류명	제출수량	비고
1	신청공문(신청기관의 직인 必)	1부	
2	사업신청서(신청기관의 직인 必) 및 수행계획서	각 1부	[서식1·2]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인감증명서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23년~'25년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8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9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재직 인원 확인용)	1부	
10	서약서	1부	[서식3]
11	참여인력 이력서	1부	[서식4]
12	사업수행실적 내역서	1부	[서식5]
13	유사사업 이행실적 증명서	1부	[서식6]
14	발표평가 자료	1부	PDF 제출

* ⑫~⑬번은 보유(해당)시 제출, 적정 여부 평가를 위해 추가 서류 요청 가능

5.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규모 : 1개社 내외

□ 선정절차 및 일정(안)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발표 평가		최종 선정 및 통보
기본 요건 충족 여부	→	사업계획서 발표(PT)	→	결과 통보
'26. 5월		'26. 6월		'26. 6월

* 향후 사업 운영 및 협의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계획

○ (평가방법)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발표 등을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 평가

- ①(서류심사) 제출 서류 기준 자격요건 및 적격 여부 평가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②(발표평가) 제안 내용에 대한 사업 책임자의 발표 평가 진행

< 발표 평가 유의 사항 >

※ 신청기관 사업 책임자(PM)가 참석하여 직접 발표하고 질의에 답하여야 함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예정

※ 사업 책임자 참석 불가 시, 공단 사전 협의 하에 실무자* 발표로 대체 가능

*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 인력으로, 참여율 50% 이상인 실무자

※ 사업 책임자는 사업 총괄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공고일 기준 신청기관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평가 당일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필수)

※ 평가장에는 기관별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 평가 운영 상황에 따라 평가 시간, 평가 방법 변동 가능(평가 관련 내용 추후 안내)

○ (최종선정) 발표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관리감독(40점)' 항목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함
 ※ 선정 수행기관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또는 추후 제출 서류 부적격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수행기관 자동 선정

-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을 최종 결과 값으로 산정

*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로 나올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 일부가 누락되어 자격 요건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최저 점수로 처리

□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서류심사	제출서류 자격요건	① (제출 서류) 공고문에 기재된 필수 서류 제출 여부 확인					적/부	
		② (신청 대상) 신청 자격,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 확인						
발표 평가	정량 (20)	유사 사업 수행 실적	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수행 능력(합산) * '26년 배정 예산(1,600백만원)을 100% 기준으로 평가					10
			달성도	100% 초과	70~100% 미만	40~70% 미만	40% 미만	
			배점	10	8	6	4	
		일반경영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신청기관 재정 상태 등 평가					10
	정성 (80)	사업 이해	①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10
		사업 운영 역량	① 사업 투입 인력 구성 계획 및 보유 인프라 현황 - 사업 운영을 위한 기관만의 강점·차별성					15
		사업 관리·감독	① 사업 운영 관리·감독 - 사업설명회 운영, 소상공인 지원·관리, 수행기관 상시 점검 계획의 체계성 및 실현 가능성					20
			② 사업비 관리·정산 - 자부담 운영 구조 이해도 및 관리 계획, 문의 대응 방안 - 수행기관 정산·산출물 검증 절차 운영 계획					20
		성과 관리	① 사업 홍보, 우수성과 발굴					10
			② 사업 운영 일정 관리 - 사업 전체 추진 일정의 적정성, 보고 체계 구성 및 관리					5
합 계							100	

6. 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기관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평가대상 제외, 선정 탈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련 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개별 통지를 통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내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류 보완 요청, 선정 평가 일정 등은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신청기관의 미확인 및 착오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협약 체결 시 협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최종 선정 후 조정 과정에서 상호협의를 하 변경 가능
- 제출 서류 중 허위 내용 기재 사실 확인 또는 이상 발견 시 탈락 처리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 및 협약 취소, 국고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그 외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기관이 없을 시, 선발하지 않거나 선정 예정 규모와 달리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후 협약 전까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타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선정기관은 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필수로 발급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수행기관 별도 부담(사업비 내 편성 및 집행 불가)
- 사업 예산 입·출금용 사업 전용 단일 계좌 개설 필수
 - 국고보조금 관리용, 소상공인 자부담금 관리용 총 2개 개설 필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 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선정기관은 보조금법, 국가계약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선정기관 책임으로 함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 포기 시, 당해 연도 및 향후 3년간 동 사업 참여 불가

7. 문의처

담당부서	내선번호	이메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지원실 온라인판로팀	042-363-7825, 7826	global@semas.or.kr

안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신청기관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제4호(계약 체결 및 이행),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전문기관 모집 및 운영
- 2026년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성과평가 및 연구를 위한 활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대표자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참여인력(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위, 생년월일, 경력사항, 자격사항),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창업진흥원](#)

■ 제공 목적

- [기관별 정책사업 운영기관의 중복 참여자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대표자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참여인력(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위, 생년월일, 경력사항, 자격사항), 사업자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수집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